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광역교통개선대책 갈등관리 체계마련, 광역교통계정 신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92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92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광역교통개선대책 갈등관리 체계마련(안 제7조의2)	3
2. 광역교통계정 신설(안 제7조의6 신설)	11
3.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0까지)	18
4.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등, 위원 기피 사유 보완 및 대리출석자의 표결권 부여(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33
5. 부담금 감면(안 제11조의2)	44
6.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안 제13조)	47
7. 부칙(부칙안 제1조 및 제2조)	49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92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9.

3. 회 부 일 : 2024. 8.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제11조의2).

Ⅲ. 검토의견

1. 광역교통개선대책 갈등관리 체계마련(안 제7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생략) <신설>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u>
<신설>	⑦ <u>제6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다만, 협의를</u>

현행	개정안
<신설>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⑨ 제8항에 따라 조정 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 내용과 제6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견조정 ----- -----.

나. 검토의견

1) 도입배경 및 개정안의 취지

현행법 제7조의2¹⁾에 따라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개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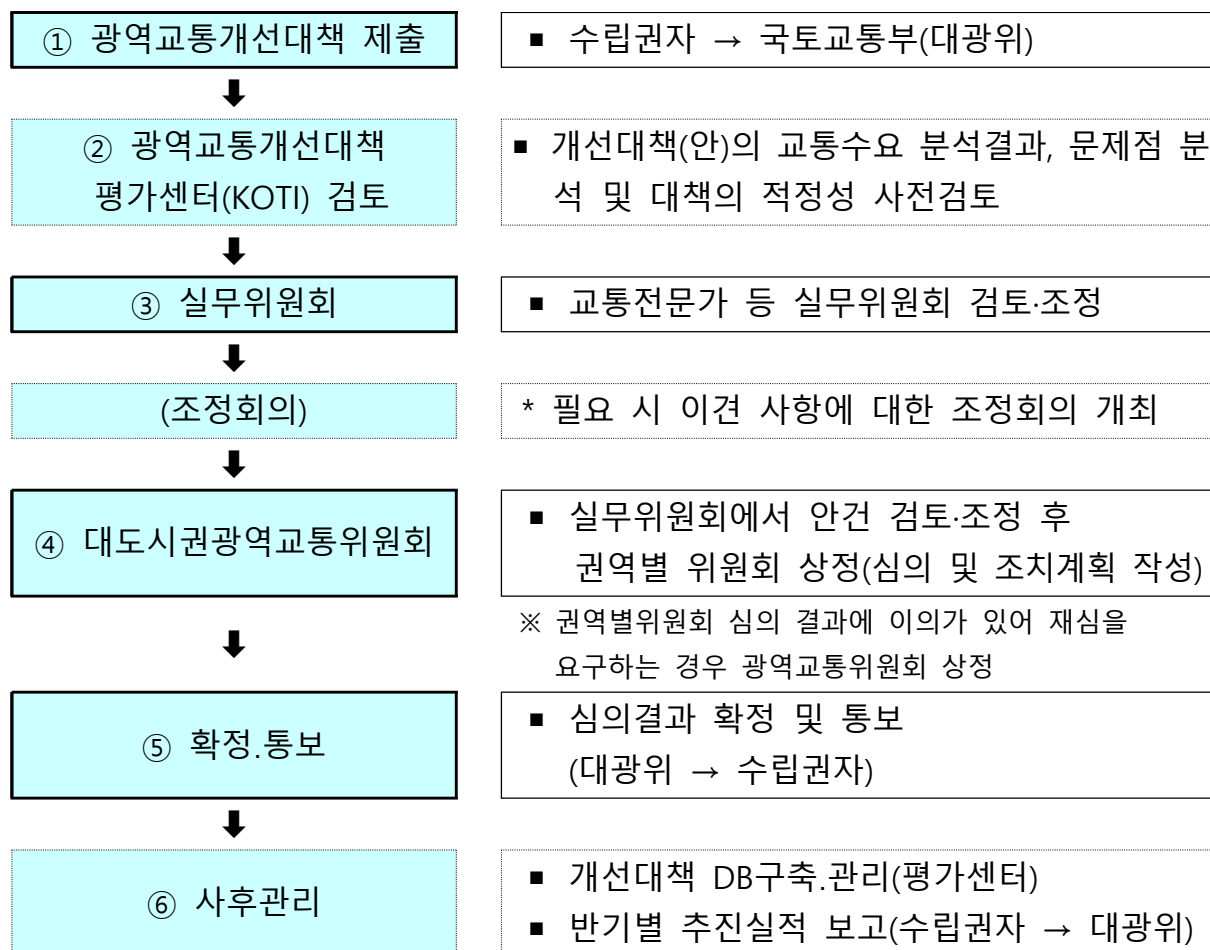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절차 >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 12월 기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분석해 보면, 총 1,353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404개 사업에서 지연이 발생하였는데,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지연되는 사유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계획의 변경,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와 연계사업의 지연, 사업 타당성 부족, 주민민원 등이 있으며, 특히, 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연사업 유형별 현황 (2023.12월 기준) >

(단위: 개)

구 분	계	도로	철도	BRT	접속 시설	환승 시설	대중 교통	기타
합 계	404	217	25	8	82	26	34	12
행정절차 지연* (관계기관협의 등)	193	111	10	3	47	15	5	2
연계사업 지연	43	9	5	4	2	5	16	2
사업타당성 부족	29	10	0	0	8	0	7	4
민원 및 소송	6	2	0	0	2	1	1	0
사업비 미확보	5	4	0	0	0	1	0	0
관련계획변경 등	42	29	3	1	5	2	2	0
기타	86	52	7	0	18	2	3	4

*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 지연’을 관계기관 간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함.

자료: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연사업 관련 갈등당사자별 갈등 유형 >

- ① 사업시행자 vs.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지자체로서 인·허가권자
- ② 사업시행자 vs. 인·허가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른 공공기관(ex. 한국수자원공사)
- ③ 특정 사업이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자·담당지자체 vs 다른 지자체

자료: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연사업 사례 >

- ▶(경의중앙선 역사신설(남양주 왕숙지구, 383억원) 역사 신설 초기 운영손실비 부담 주체 관련하여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중단
- ▶(서하남IC~초광삼거리 확장(하남 감일지구, 604억원)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계기관간 이견, 사업 중단

자료: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 시 관계기관 간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간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²⁾

그런데 현행법상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갈등당사자에 해당함에도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검토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나 시정 요청 규정은 기관 간 갈등 해소보다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대책의 개선이나 시정에 관한 것으로 갈등관리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³⁾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함

2)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의3. (생략)

6.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가., 나. (생략)

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요청한 사항

3) 개정안에 따른 ‘조정’ 용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166조에 따른 조정과 유사하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써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며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조정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으로써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개정안은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지연을 해소하여 사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신도시 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개정안 제7조의2제7항은 조정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갈등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속하게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표현은 협의와 조정 등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국토교통부 의견

기존 관련기관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사업 변경, 이전 조정 등이 빈발하여 추진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관계기관 간 갈등관리는 개발시행자가 전담하고 있어, 갈등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갈등 포착 및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갈등 신속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불필요한 장기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개정안에 동의함.

2. 광역교통계정 신설(안 제7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회계처리하도록 함.

그리고 개정안은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매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투자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투자 및 집행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u> <u>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u>

현행	개정안
	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재원은 개발사업의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해당 개발지구의 입주민이 부담하는 구조로서, 재원의 관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주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각 지구별로 분산되어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재원과 구분 없이 통합 관리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

조성원가 산정표(제8조제3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	세부 명세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공공주택지구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현행 광역교통 개선대책 자원관리 >

A 지구	B 지구
本 개발사업비 +	本 개발사업비 +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자료: 국토교통부

이로 인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감사원에서도 2023년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감사결과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 중 하나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회계정보시스템(WISE31)에 해당 지구의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에서 개선대책 사업비를 분리하지 않은 채 통합 관리하고 있어 각 세부 사업별로 정확한 실제 집행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지구 전체 사업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음.

4) 감사원, 「감사보고서 -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 2023. 1.

참고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의 별도 분리와 관련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⁵⁾에서도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토지은행계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매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투자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정하려는 것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광역교통계정 설치 대상자를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기업 등이 있으며, 개정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대상을 모든 사업시행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계정 신설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사업의 주된 시행자이고, 감사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적한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선대책 사업시행자 현황 >

(단위 : 건)

구분	합계	LH	LH +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 등	민간 + LH 또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	민간
개수	130	66	13	37	5	9

* LH는 전체 130개 개발사업 지구 중 82개 지구(63%)의 개발사업 시행자임.

※ 자료 : 국토교통부

둘째, 개정안은 계정의 재원 조달 및 지출 용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계정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원 조달 및 지출 용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은행계정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달 및 토지은행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⁶⁾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또한 해외자산계정을 설치하면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용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⁷⁾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 7)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발사업자가 개선대책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 설치가 필요함.

광역교통계정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각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운영체계·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시행령에서 마련할 예정임.

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무자 역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 등으로 다양하나 광역교통계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최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공공기관 외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 타기관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투명한 광역교통 재원 관리 등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계정 도입기관을 공공기관 외 시행주체로 확대가 필요함.

3.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0까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의7),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여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8).

또한 도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토지 등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의9),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사업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의 종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현행	개정안
	<u>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2. 주민 의견청취 3.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위치 및 면적 2. 도로사업시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7조의7에 따라 도로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현행	개정안
	<u>고시</u>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또는 해제, 같은 법 제34

현행	개정안
	<u>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u> <u>10.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u> <u>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u> <u>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u> <u>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u> <u>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u> <u>15.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u>

현행	개정안
	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0.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개장허가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

현행	개정안
<신 설>	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공하수도 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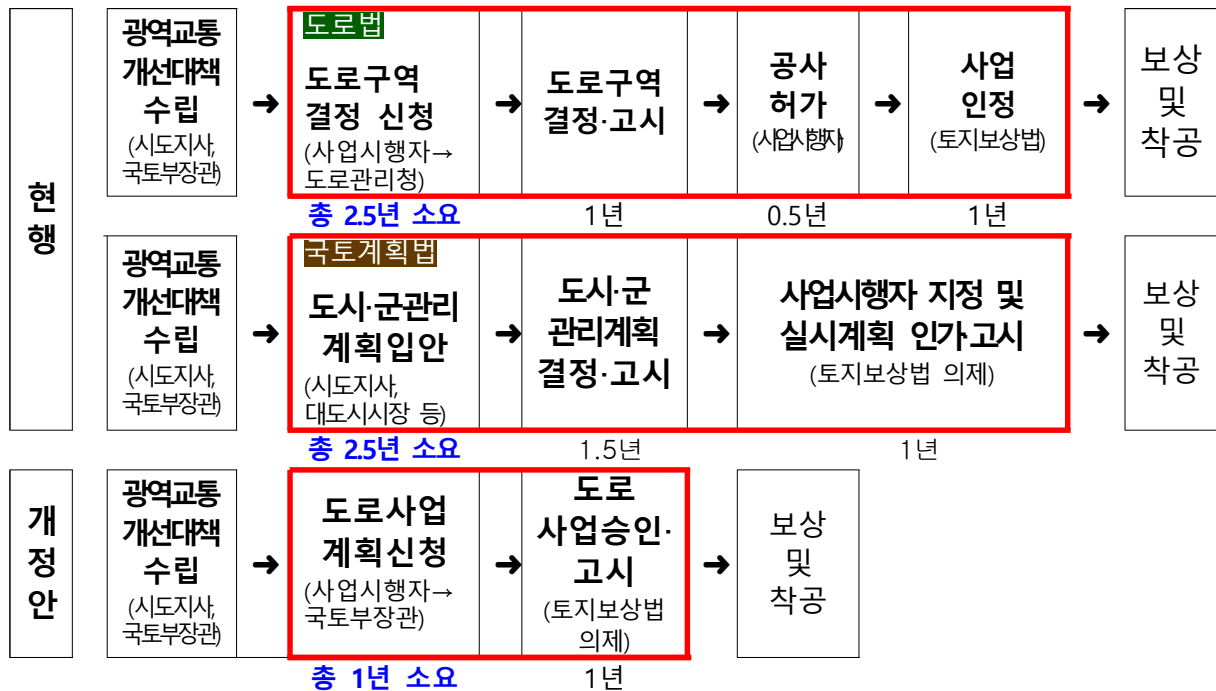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u><신 설></u>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사업 시행지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의7제4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도로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현행	개정안
	<u>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로서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로서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u> <u>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발 행위허가”는 “도로사업 계획 승인”으로 본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도로구역 결정 신청 이후 해당 도로관리청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사업시행자의 공사허가 신청 및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공사 착공을 위한 관련 사업승인 절차에만 약 2.5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경우 지자체 간 갈등 등으로 절차가 장기화되는 측면도 있음.

【 광역교통 개선대책 도로사업 추진절차 비교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이를 위한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공공시설의 귀속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고시할 경우 총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행 대비 약 1.5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처럼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도로사업 계획 승인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의견청취 절차, 예외사항, 방법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도 없음.

유사 입법례로 「공공주택법」 제10조에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대해 규정하며,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⁸⁾

주민 의견수렴의 예외사항,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개정안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중 제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8) 「공공주택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이용의 일반적 기준인 용도지역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칭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는 도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의 경우 도로사업의 인·허가 의제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준공시 준공검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준공검사 과정에서 혼선 및 그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준공절차 등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할 수 있음.

한편,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의 일반적 기준인 용도지역 지정변경, 기반시설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칭하며, 관할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의제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 중 도로에 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만 해당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사업 준공 시 인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개정(안)의 경우 준공검사 주체가 불분명하여 혼선이 예상되며,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사업 준공 시 의제되는 인허가의 준공검사·인가 의제가 가능하나⁹⁾,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개별 준공검사가 필요하여 지연이 우려됨.

이에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안에 준공절차를 규정하도록 수정안을 건의함.

개정안	한국도시주택공사 수정의견
<신 설>	제7조의11(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

9) 도로법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18호 <생략>

-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	한국도시주택공사 수정의견
	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로사업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도로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상정 전 주민 의견청취(주민설명회)와 더불어 유관기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함.

4.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등, 위원 기피 사유 보완 및 대리출석자의 표결권 부여(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견조정,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을 추가하고, 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권역별 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구분함.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명위원 제척기준을 완화하고 하위직위 공무원이 대리출석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과정에서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6에 따른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7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4.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에 따른 특별대책지구 및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6. 제7조의11부터 제7조의14까지----- ----- -----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 및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의2. 제7조의15----- ----- ----- -----
4의3. 제7조의11에 따른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사항	6의3. 제7조의16----- -----
5. ~ 7. (생략)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역교통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 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권역별 위원회: 제8조제2항 각 호

현행	개정안
② <u>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u> ③ <u>권역별 위원회의</u>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u>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u> ⑤ 그 밖에 <u>권역별 위원회의</u>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u>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등</u>) ① <u>광역교통위원회</u>	(제3호의2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u>분과위원회</u> 2. <u>갈등조정위원회: 제8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갈등</u> 사항을 심의·조정 및 의결하기 위한 <u>분과위원회</u> ②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u>----- ----- ----- <u>분과위원회의 당연</u> 직 -----. ③ <u>분과위원회</u> ----- ----- -----. ④ <u>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u>고 인정하는 경우 <u>광역교통위원회에</u> 우선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할 수 있다. ⑤ ----- <u>분과위원회</u>----- ----- -----. 제9조의6(<u>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u>) ① -----

현행	개정안
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u><u>의</u><u>하</u><u>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u>권역별 위원회</u>의 의결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위원장은 회의의 결과를 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권역별 위원회</u>의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u>경우</u> <u><단서 신설></u>	----- ----- ----- <u>분과위원회</u>----- -----. ② ----- <u>분과위원회</u>----- ----- <u>개</u><u>의</u><u>(開議)</u><u>하</u><u>고</u>----- -----. ③ <u>분과위원회</u>----- ----- ----- -----. ④ ----- ----- <u>분과위원회</u>----- -----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분과위원회</u>----- ----- ----- -----. 1. ----- -----<u>경우</u>. <u>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u>

현행	개정안
2. (생략) 3.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해당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생략) <u><신설></u> ⑨ 그 밖에 광역교통위원회 및 <u>권역별 위원회</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u>다른 위원인 경우로서 위원장이 객관적·중립적 심의·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3. ----- <u>분과위원회</u>----- ⑦ ----- <u>분과위원회</u> ----- -----. ⑧ (현행과 같음) ⑨ <u>광역교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광역교통 담당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u> ⑩ ----- <u>분과위원회</u>-----

현행	개정안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의견

1)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등

개정안은 현행법 제8조의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개정안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업무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광역교통위원회가 갈등조정기능 및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 관리,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다만, 안 제9조의5제4항은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조정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안건의 소관이 분과위 또는 본회의로 정해지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역할 분담과 안건 배분을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에 따르면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

항'에 관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¹⁰⁾ 권역별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

2) 위원의 심의 제척 사유 보완

현행법 제9조의6제6항은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심의 대상 안건이 단순히 위원이 속한 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되고 있어, 특히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된 심의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이 의결에서 제척되어 위원회 형태로 기구를 조직한 취지가 형해화되는 실정이라는 입장임.

이에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명직 위원의 경우 위원장이 객관적·중립적 심의·조정 및 의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지 않도록 하여 제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10)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① 대도시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별로 구성되는 권역별 위원회(이하 “권역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권역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권역별 위원회는 관할 권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우선하여 심의·의결한다.

3) 대리출석자의 표결권 부여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¹¹⁾는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명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 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하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교통위원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명직 위원 현황 >

연번	소 속	직위	연번	소 속	직위
1	국토교통부(본부)	교통물류실장	10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2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11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3	행정안전부	차관보	12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13	경기도	행정2부지사
5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14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6	부산광역시	마케팅부시장	15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7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16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8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17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9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18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자료: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와 권역별 위원회는 2024년 그동안 총 7차례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광역교통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명직 위원이 불참하였고, 14개 지방자치단체 중 4개의 지방자치단체 지명직 위원이 불참하였으며, 6차례의 수도권 권역별 위원회에는 서울·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 ①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안전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인천·경기 지명직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음.

< 2024년 대면회의 개최·참석 현황(중앙정부 및 지자체 부단체장 참석 중심) >

연 번	시기	구분	의안명	참석대상(1호·2호)
1	2024.1	수 도 권 권역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4건	·(서울) 대참(교통기획관) ·(인천) 부시장 참석 ·(경기) 부지사 참석
2	2024.2	수 도 권 권역위	송파하남선 차량정비 위·수탁 관련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간 이견 조정방안	·(서울) 대참(교통기획관) ·(인천) 불참 ·(경기) 대참(철도항만물류국장)
3	2024.3	수도권 권역위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환승편의성 검토(안) 등 2건	·(서울) 불참 ·(인천) 불참 ·(경기) 대참(철도항만물류국장)
4	2024.5	수도권 권역위	중전부동산 5지구(효행 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 4건	·(서울) 불참 ·(인천) 불참 ·(경기) 불참
5	2024.8	본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021~2025) 변경(안) 등 2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참석 ·(기재부) 불참 ·(행안부) 불참 ·(행복청) 차장 참석 ·(지자체) ① 인천(부시장)·대전(부시장)·경북 (부지사) 참석, ② 서울(교통기획관), 경기(교통국장), 부산 (교통혁신국장), 울산(교통국장), 경남(교통국 장), 세종(교통국장), 충북(균형건설국장) 대 참 * 14개 광역 중 10곳 참석(그외 불참)
6	2024.8	수도권 권역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 등 7건	·(서울) 불참 ·(인천) 불참 ·(경기) 대참(교통국장)
7	2024.10	수도권 권역위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 3건	·(서울) 대참(교통기획관) ·(인천) 불참 ·(경기) 대참(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시행령의 하위직위 대리출석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명직 위원의 대면회의 참석이 저조한 문제가 초래
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명직 위원의 대리출석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높아져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구와 직무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명직 위원의 바로 하위직위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안별로 대리 출석이 인정되는 그 바로 하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회의 참석율이 높아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7항¹²⁾에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하위 직위 대리 출석과 직무 대행을 규정하고 있음.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략)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⑧ ~ ⑫ (생략)

다. 국토교통부 의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권역별 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로 구성, 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음.

지명위원 제척기준 완화 및 하위직 대리출석에 따른 직무대행을 추가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

5. 부담금 감면(안 제11조의2)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생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략)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 -----.
1. ~ 4. (생략)	제8호----- 제7호까지 ----- -----.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신설>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5. (생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하며¹³⁾,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의 주택공급 및 개발 촉진을 위해 부담금의 100분의 75을 경감하고 있음.¹⁴⁾

개정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¹⁵⁾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¹⁶⁾, 「도시재

13)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4)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¹⁷⁾의 경우에도 도시지역의 복합개발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목적이 유사한 사업 간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임.

15)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1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6. 권한의 위임 규정 보완(안 제13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 <u>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u> ----.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에 열거되어 있는데¹⁸⁾,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 ③ < 생략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령”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및 통보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확정, 변경 및 통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 실적의 접수,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추진계획 집행실적의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개정안은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광역교통위원회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등 위임규정 개정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게 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도로사업의 공고,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등의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5.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직접 수립,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확정·변경 및 통보,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 검토, 개선 권고 및 시정 요청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한 협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 청구 및 재정 지원 중단·축소
 7.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폐지
 8.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성시설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구성시설의 지정·고시
 9. 영 제8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접수
 10. 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자료의 접수

7. 부칙(부칙안 제1조 및 제2조)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7조의6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교통계정 신설의 경우 회계시스템 정비기간 및 통상적인 회계운영 시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규정하여 적용 시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개정안은 타당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광역교통 개선대책 개요

□ 추진배경

-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 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심화
-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 (법적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 세부내용

- (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택지개발,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역개발, 온천·관광지·유원지·공원개발 사업 등

- (수립시기)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개발사업 유형마다 상이

- (수립권자)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 사업)

- (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수립현황) '23년 기준, 130개 지구(1,353개 사업) 수립·확정

- (재원부담) 개발사업시행자(LH 등) 등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지침」 제19조

- (추진절차)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제출(수립권자 → 대광위) → KOTI 평가센터 검토 → 대도시권광역위원회(실무위·권역위) 심의·확정

참고 2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현황

- (수립 현황)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립 대상이며, 택지·공공주택·도시개발사업(94개, 72.3%)이 대다수

* 개발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등이 1만명 이상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현황 (23.12, 기준) 】

구분	합계	택지개발	공공주택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기타
지구수	130*	38	32	24	21	6	9
수도권	87	31	28	16	8	3	1

- (이행 현황) 총 1,353개 세부 사업 중 833개가 완료(이행률 61.6%) 되었으나, 사업비는 총 102조원 중 60.1조원 집행(집행률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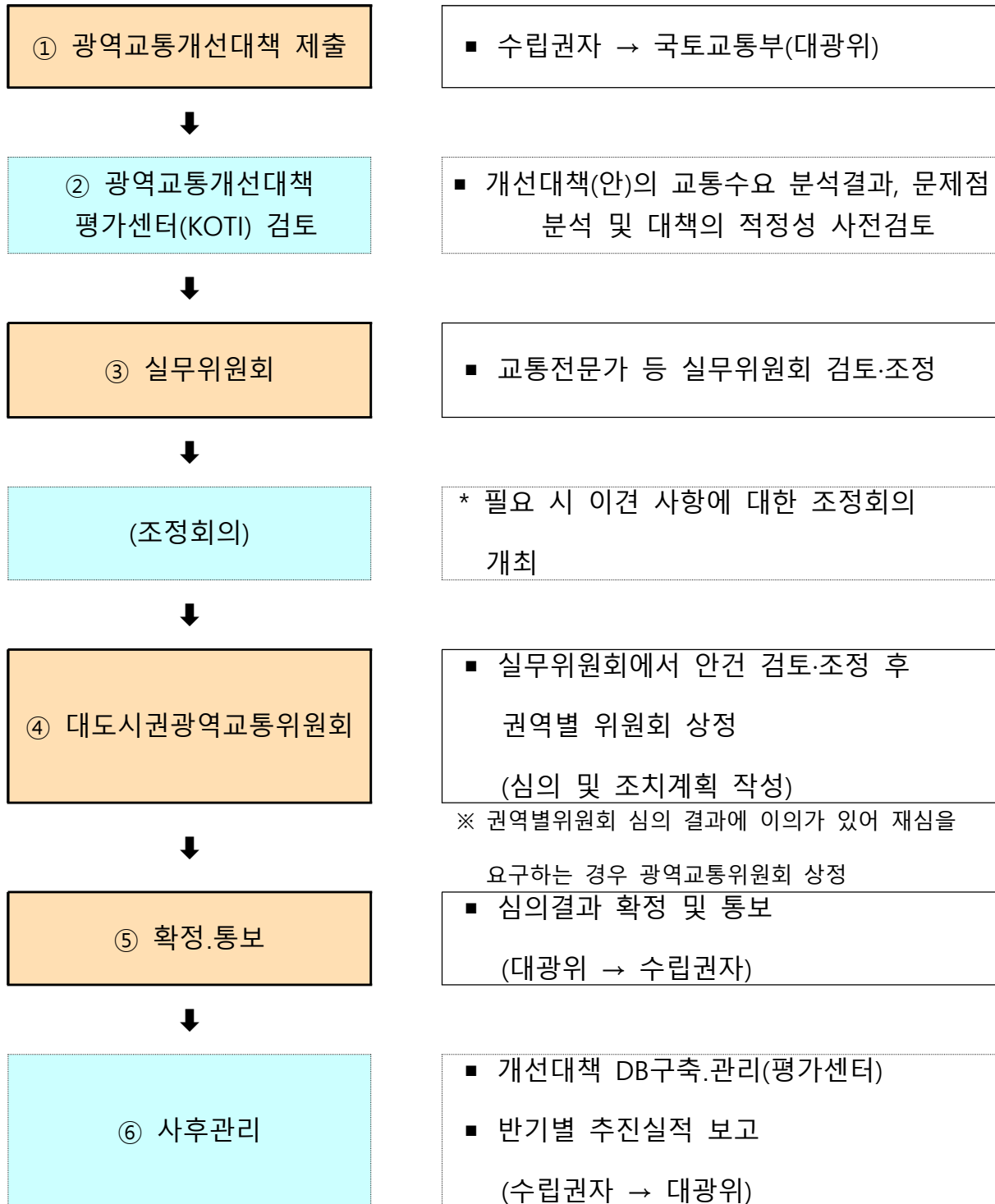
- (미완료 사업) 도로가 217로 가장 다수이나, 이행률 면에서는 철도가 가장 저조(49개 중 37개 완미료, 미이행률 75.5%)
- (미집행 사업비) 전체 41.9조원이 미집행 중이며, 도로(18.4조원), 철도(19.8조원)가 미집행 사업비의 91.1%를 차지

【 광역교통 개선대책 세부사업 추진현황 (23.12, 기준) 】

구 분		계	도로	철도	BRT	접속시설	환승시설	대중교통*	기타**
이행 현황 (사업수)	사업수(개)	1,353	684	49	26	268	70	229	27
	완료	833	420	12	14	173	36	169	9
	이행률(%)	61.6	61.4	24.5	53.8	64.6	51.4	73.8	33.3
	공사중	139	81	17	4	26	3	5	3
집행 현황 (사업비)	미착공	381	183	20	8	69	31	55	15
	대책비(천억)	1,020.1	631.3	314.4	11.7	40.6	13.9	3.8	4.4
	집행액	601	447.1	116.2	2.7	28.1	3.7	1.9	1.3
	집행률(%)	58.9	70.8	36.9	23.1	69.3	26.5	49.9	30.4
	미집행액	419.1	184.2	198.2	9	12.5	10.2	1.9	3.1

참고 3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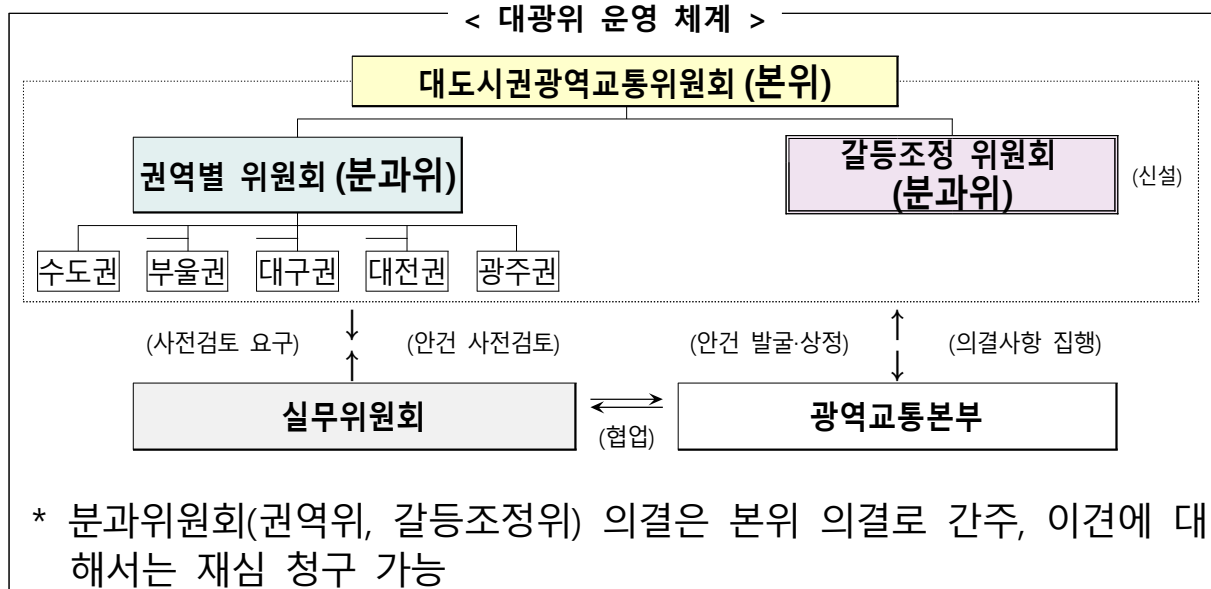


참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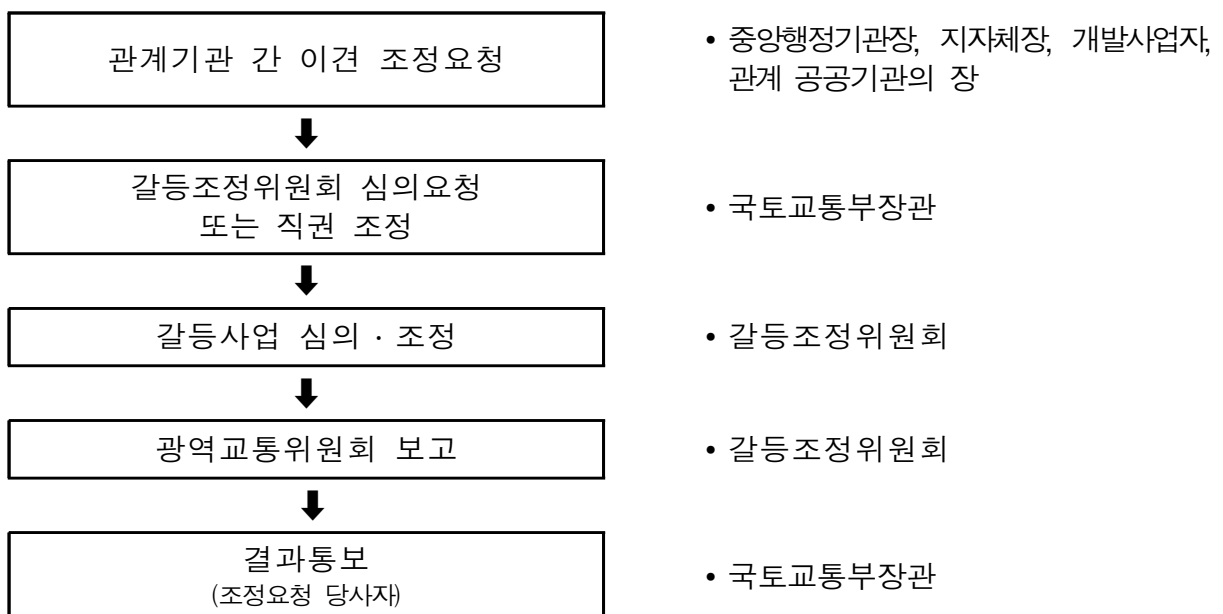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안)

□ 위원회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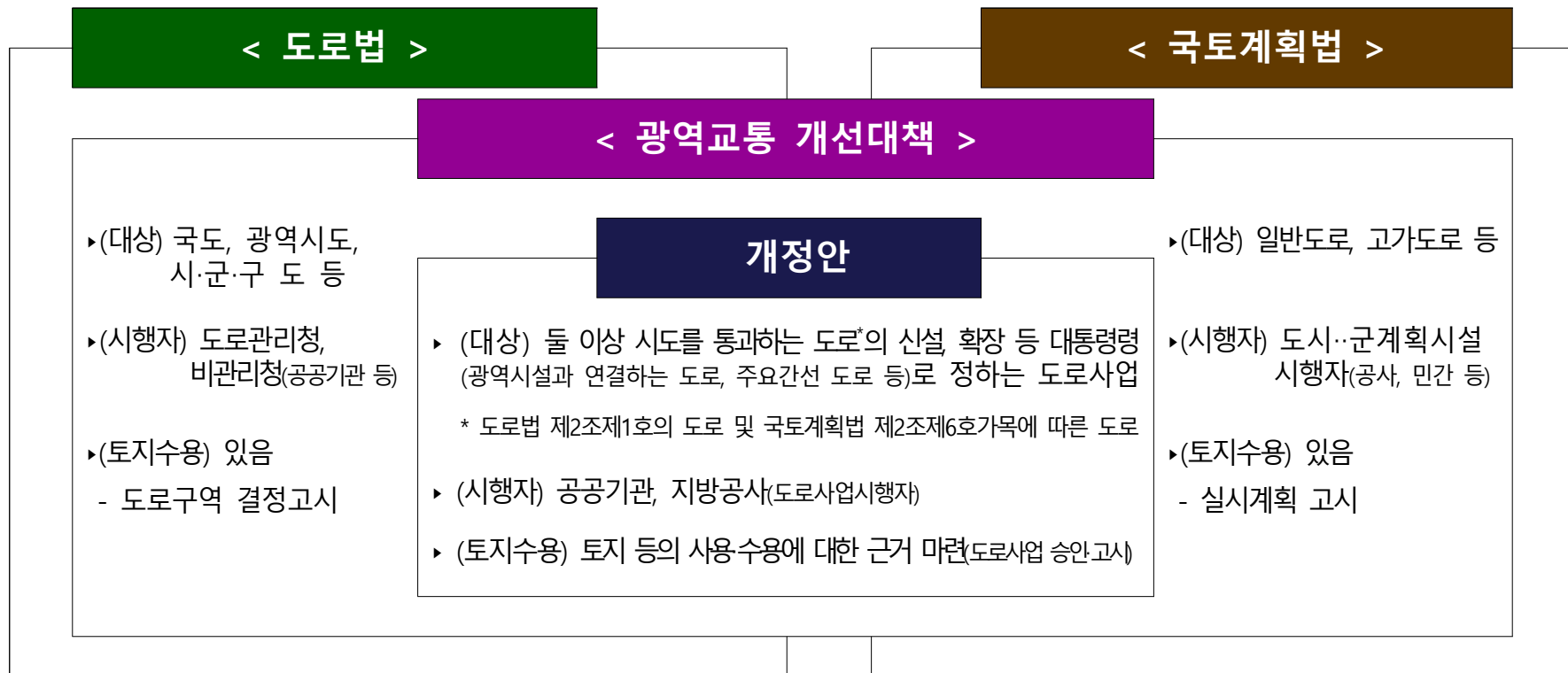
- (위원장) 대광위원장 1명, (위원) 상임위원 포함 10명 이내(본위 위원중 선임)



□ 갈등 조정 절차도(안)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 비교 】



참고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개요

- (목적)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

*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

-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

- (부과대상) 대도시권의 택지개발·도시개발·대지조성·주택건설·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건축사업

*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내 부과,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액	2,222	1,642	2,302	1,949	1,526

- (부담금 배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40%**,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 귀속

- (사용용도) ①광역교통시설 ②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교통시설 ③광역도로 성격의 지방도 등 ④일반철도역 인근 주차장 ⑤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광역교통법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택지조성 등 : $1\text{m}^2\text{당 표준개발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개발면적} \times (\text{용적률}/200) - \text{공제액}$
- 주택건설 등 : $1\text{m}^2\text{당 표준건축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건축연면적} - \text{공제액}$
- 주상복합 등 : $1\text{m}^2\text{당 표준건축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건축연면적}(\text{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 \text{공제액}$

* 부과율 : (택지조성 등) 수도권 30% 비수도권 15% (주택건설 등) 수도권 4% 비수도권 2%
지자체 조례로 50~1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임대주택, 청사용지, 각급학교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공제액 : 당해 사업관련 철도 건설 비용, 사업시행지 밖의 도로 설치 비용 등

참고7

유사사업(민간 재개발, 도심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비교

구분	민간 재개발사업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공 도심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근거법	「도시정비법」	「도심복합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생법」
사업자	조합 중심	신탁·리츠 중심	LH 등 공공기관 중심	LH 등 공공기관 중심
사업 목적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 정비	복합개발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 신속 공급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택, 업무·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	쇠퇴한 도심 내 주거·상업·산업 기능 거점 조성
사업 대상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역으로 도시환경이 불량한 지역 등	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지역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지역 * 연내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예정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인 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쇠퇴지역 (인구 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역 추가 필요
사업 절차	① 정비구역 지정 ② 추진위·조합설립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이주·착공·준공	① 지구지정 ② 사업시행계획인가 ③ 관리처분계획인가 ④ 이주·착공·준공	① 지구지정 ② 복합사업계획승인 ③ 이주·착공·준공	① 지구지정 ② 시행계획인가 ③ 이주·착공·준공
토지 확보	수용 * 현시점의 감정평가액 보상	매도청구 * 기대이익이 보상금에 포함	수용 * 현시점의 감정평가액 보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주거재생 한정)* * 현시점의 감정평가액 보상
주민 동의요건	토지주 3/4 + 토지면적 1/2 동의로 조합 구성 후 사업	토지주 2/3 + 토지면적 1/2 동의로 지구지정	토지주 2/3 + 토지면적 1/2 동의로 지구지정	토지주 2/3 + 토지면적 2/3 동의로 지구지정(주거재생 한정)
의사결정 방식	조합총회	사업시행자 중심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사업시행자 중심 * 주민협의체 의결	사업시행자 중심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주거재생 한정)
교통영향 평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복합사업계획 통합심의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	시행계획 통합심의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심의